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개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 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외부 방문객 출입(면회)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니, 각 시도(시군구)는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진단** : 전문의 2인 이상 근무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한시적 당면 지정하고, 자체 추가진단[붙임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205호('20.2.20.)) **전국 확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근무** 등 자체 추가진단이 어려운 정신의료기관 중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행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에 한하여** 전문의 1인 진단 **한시적 예외 허용**

-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 및 진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보건소장)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적극적인 협조 요망

※ (근거 규정)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및 제6항 제1호에 따른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입원적합성 대면조사** : **한시적으로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

- '환자의견진술서'[붙임2]로 대체하고 필요 시 유선 면담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대한 독립적 공간에서 환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의료기록 등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

※ (근거 규정) 정신건강복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적용일자** : **2020.2.24.(월)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개정) 1부

2. 환자의견진술서 참고서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건강증진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의료과장), 울산광역시(시민건강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 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정신건강사업과장), 국립나주병원장(정신건강사업과장), 국립부곡병원장(정신건강사업과장), 국립춘천병원장(정신건강사업과장), 국립공주병원장(정신건강사업과장),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주무관 박귀현 약무사무관 대결 2020.2.23. 정신건강정책 전결
방은옥 과장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정책과-1243 (2020. 2. 2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862 팩스번호 044-202-3940 / p20061001@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